

산업안전보건법 - 소음허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21·22]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517조 · [별표 2-1]

○ 작업환경 관리 기준

구분	기준 내용
작업환경측정 대상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소음성난청 유발 우려 수준	85dB(A) 이상 (시행규칙 별표 18)
특수건강진단 대상	85dB 이상 작업 (시행규칙 별표 22)
청력보호구	착용으로 8시간 평균 90dB(A) 이하가 되도록 차음효과 확보 (KOSHA GUIDE H-160-2014)

○ 소음 노출 기준 (안전보건규칙 별표 2-1)

구분	기준
소음 노출 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 (교환율 5dB)
소음작업	1일 8시간 기준 85dB(A)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	90dB 8시간 ↑ / 95dB 4시간 ↑ / 100dB 2시간 ↑ / 105dB 1시간 ↑ / 110dB 30분 ↑ / 115dB 15분 ↑
충격소음작업	120dB 초과 1만회 ↑ / 130dB 초과 1천회 ↑ / 140dB 초과 1백회 ↑ (1일)

○ 사업주 준수사항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소음측정·평가, 공학적·의학·행정적 대책, 교육, 청력검사, 기록관리
(안전보건규칙 제517조)
소음의 유해성·예방에 관한 정기 교육 실시 및 정기 청력검사 실시

○ 출처 및 원문 확인

<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2EB%B2%95>
—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2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21·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EC%95%88EC%A0%84EB%B3%B4EA%B1%B4EA%B7%9CEC%B9%99>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517조·[별표 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kosha.or.kr> — KOSHA GUIDE H-160-2014 청력보호구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